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

발의연월일: 2024. 7. 15.

발 의 자:조인철・박지혜・박해철

정준호 • 박균택 • 정진욱

민형배 • 고민정 • 이개호

송재봉 • 전진숙 • 서영석

신정훈 · 이용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4조의2에 따른"을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차의 전면과 후면이 촬영 가능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차의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① ~ ③ (생	·해제 및 관리)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4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	
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u>제4조의2에</u>	<u>제4조의2제</u>
<u>따른</u>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2항에 따라 차의 전면과 후면
설치하여야 한다.	<u>이 촬영 가능한</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